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9. 3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(2021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지우선)

가. 제안이유

- 시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 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런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 -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(안 제2조)
 -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(안 제3조 ~ 제4조)
 -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(안 제5조 ~ 제6조)
 -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(안 제7조 ~ 제8조)

○ 모범사업자 지원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안건은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 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.
- O 주요 개정내용은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이고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2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.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.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.
-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O 본 개정조례안은
- 「자동차관리법」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·운영 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, 홍보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,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81 호 제출연월일: 2021. 8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
나.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(안 제2조)

다.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(안 제7조 ~ 제8조)

바. 모범사업자 지원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1. 21. ~ 2. 5. / 1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정계획의 수립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(이하 "모범사업자"라 한다)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3조(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)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모범사업자 지정 등)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정증 등의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(이하 "지정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(이하 "표지판"이라 한다)을 교부한다.

-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야 한다.
-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6조(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)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 -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. 이 경우 "지정"은 "재지정"으로 본다.
- 제7조(모범사업자 관리대장)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8조(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)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
 - 2.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3.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·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
 - 4.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
- 제9조(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

- 2.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(제5조 관련)

- 1. 규격 및 재질
 - 가. 규격 : 50cm(가로) × 30cm(세로)
 - 나.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
- 2. 표지판 도안 등
 - 가. 도안

지정번호:

지정기간: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

상호 :

위 업소를 「자동차관리법」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영 등 포 구 청 장

- 나. 색상
- ㅇ 바탕 : 은회색
- ㅇ 글씨 : 상호는 노란색. 상호 이외에는 흑색
- 다. 그 밖에 영등포구의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(재지정)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				
신청인	상호(명칭)		관리사업	등록번호				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 (남/여)								
	주소		전화번호							
신청구분	[] 지정	[] 7	대지정				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		
				년	월	일				
신청인						명 또는 인)				
영등포구청장 귀하										

지정번호: 제호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

- 상 호:
- 대 표 자 :
- 소 재 지 :
- 업 종:
- 지정기간 :

위 업소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영 등 포 구 청 장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

연번	지정 번호	지정 일자	상호	업종	대표자	소재지	비고